

창업교육센터운영규정

제정	2014.04.01	1차 개정	2014.08.08
2차 개정	2015.02.01	3차 전면개정	2015.08.01
4차 개정	2018.06.01	5차 개정	2019.02.01
6차 개정	2022.10.04	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“이라 한다.) 창업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“라 한다.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<삭제 2022.10.4.>

제3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창업교육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
2. 창업 강좌 및 기술창업아카데미 운영
3. 창업동아리 발굴 및 운영 사업
4.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운영
5. 예비창업인력 지원 및 창업교육 인식확산 사업
6. 창업교육 강화에 필요한 지원업무 <개정 2018.6.1.>
7. 기타 가족회사에 대한 신규 창업지원사업 <신설 2018.6.1.>

제4조(적용범위) 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5조(조직) ①센터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창업교육지원팀을 둘 수 있다.

②창업교육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창업관련 교과목 개설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
2.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
3. 창업문화 확산 지원사업(창업캠프, 창업아카데미, 단기 창업특강, 성공 CEO 특강) 운영
4. 창업교육 교원이력 인증
5. 창업교육 관련 자격제도 운영 등
6. 창업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현황자료 조사 및 분석
7. 창업교육 성과지표, 학생의 창업가정신 단계별 성취도 지표개발 등
8. 창업네트워크 사업(창업전문 멘토링, 창업전문가 컨설팅) 운영 및 관리
9. 인프라 확산을 위한 제도 수립 및 운영

제6조(임원 및 직무) ①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.

②센터장은 산학협력 및 창업 관련 경험을 가진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2.10.4.>

③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부센터장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이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8.6.1.>

제7조(운영인력) ①센터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운영인력의 업무는 센터장이 분장한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창업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분석·환류·개선에 관한 사항

<개정 2019.2.1.>

2. 창업교육 강화,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
3. 창업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현황자료 조사 및 분석

4.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창업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

5. 기타 창업교육 관련사업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으로 하고,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7명 내외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10.4.>

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 <개정 2022.10.4.>

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의2(평가및활용) 창업지원사업의 운영 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, 창업지원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활용한다. <신설 2019.2.1.>

제9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교비, 국고지원금, 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기타수입금으로 한다.

제10조(회계) ①센터운영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본 대학 회계처리규정에 따른다.

②재정지원 기관이 별도의 회계처리규정을 제시할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.

제11조(시행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